



제 432국회 (임시회)
제3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우주발사체 발사안전구역 지정 등 〉

■ 한민수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5208호)

2026. 2.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문위원 강 대 훈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1. 우주발사체 발사안전구역 지정 등(안 제11조의2 및 제19조의2 신설 등)	2

I.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 한민수의원 등 18인

나. 발 의 일 : 2025. 12. 12.

다. 회 부 일 : 2025. 12. 15.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우주개발을 체계적으로 진흥하고 우주발사체 발사허가 및 관련 협조체계를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우주발사체 발사시설 주변지역의 개발행위를 사전에 조율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미비하여 우주개발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음.

최근 나로우주센터 인근 해역에 해상풍력발전시설이 이미 발전사업 허가를 받았거나 신청 중인 상황을 뒤늦게 파악하는 문제가 발생함. 이러한 해상구조물들은 우주발사체의 비행경로 및 안전통제구역과 중첩되어 국가 우주개발 사업의 원활한 추진에 장애요인이 되고 있음.

이에 우주항공청장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우주발사체 발사안전구역을 지정하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해당 구역 내에서 해상구조물 설치 등의 허가처분을 하려는 경우 우주항공청장과 사전 협의하도록 함으로써 우주발사체의 안전한 발사·운용을 보장하고 국가 우주개발사업의 체계적 추진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11조의2 및 제19조의2 신설 등).

Ⅲ. 검토의견

1. 우주발사체 발사안전구역 지정 등(안 제11조의2 및 제19조의2 신설 등)

가. 개정안의 내용

개정안은 우주항공청장이 우주발사체의 안전한 발사 및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한 후 위원회 심의를 거쳐 ‘우주발사체 발사안전구역’으로 지정하도록 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발사안전구역 내에서 건축물 신·증축, 도로·철도 및 해상구조물 설치 등 행위의 허가나 처분을 하려는 경우 우주항공청장과 사전 협의하도록 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신설>	<u>제11조의2(우주발사체 발사안전구역의 지정 등) ① 우주항공청장은 우주발사체의 안전한 발사 및 운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하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라 한다)과 미리 협의한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우주발사체 발사시설 주변지역을 우주발사체 발사안전구역(이하 “발사안전구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하거나 이를 변경 또는 해제할 수 있다.</u> <u>② 발사안전구역은 우주발사체의 안전한 발사 및 운용에 필요한 최소한</u>

현행	개정안
<신 설>	의 범위에서 지정되어야 한다. ③ 우주항공청장은 우주발사체 발사 시설의 철거, 우주발사체 발사환경의 변화, 그 밖의 사유로 발사안전구역을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 ④ 우주항공청장은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발사안전구역을 지정·변경 또는 해제한 때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⑤ 발사안전구역의 지정·변경 또는 해제의 기준, 절차 및 발사안전구역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의2(행정기관의 처분에 관한 협의 등) ①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발사안전구역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한 허가나 그 밖의 처분(이하 “허가등”이라 한다)을 하려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협의 절차와 기준에 따라 우주항공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1. 건축물의 신축·증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건축물의 용도변경 2. 도로·철도·교량·운하·터널·수로·매설물 등과 그 부속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변경 3. 하천 또는 해면의 매립·준설(浚渫)과 항만의 축조 또는 변경 4. 해안의 굴착

현행	개정안
	5. 토지의 개간 또는 지형의 변경 6. 해저시설물의 부설 또는 변경 7. 해상풍력발전시설 등 해상구조물의 설치 8. 통신시설의 설치와 그 사용 9. 총포의 발사 또는 폭발물의 폭발 10. 부표(浮標)·입표(立標), 그 밖의 표지의 설치 또는 변경 11. 그 밖에 우주발사체의 안전한 발사 및 운용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발사안전구역 안에서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는 우주항공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발사안전구역의 관리 및 우주발사체의 안전한 발사·운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협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허가등을 받으려는 자(이하 이 조에서 “허가등의 신청인”이라 한다)는 허가등을 신청하기 전에 우주항공청장에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우주발사체의 안전한 발사 및 운용 등에 지장이 없는지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현행	개정안
	<u>정하는 바에 따라 사전상담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우주항공청장은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사전상담 결과를 요청인에게 알려주어야 한다.</u> <u>⑤ 우주항공청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협의요청을 받은 경우 60일(제4항에 따른 사전상담 결과를 요청인에게 알려준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그 의견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 또는 해당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의견에 대한 구체적인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u> <u>⑥ 우주항공청장은 제5항에 따른 통보기한을 1회에 한하여 10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그 연장 사유, 처리현황, 연장 기한을 명시하여 알려주어야 한다.</u> <u>⑦ 제5항 또는 제6항에 따라 의견을 통보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 또는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는 그 의견에 이의가 있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우주항공청장에게 재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u> <u>⑧ 제5항 또는 제6항에 따른 협의결과에 이의가 있는 허가등의 신청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우주항공청장과 재협의를 하여 줄 것을 요청</u>

현행	개정안
제20조(우주개발의 지원 및 협조 요청) ① 우주항공청장은 우주개발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u>중앙행정기관의 장</u>이나 <u>지방자치단체의</u>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지원 및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 및 협조를 요청받은 관계 <u>중앙행정기관의 장</u> 또는 <u>지방자치단체의</u>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1. 2. (생략) ② (생략)	<u>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u> ⑨ <u>우주항공청장이 제7항 및 제8항에 따라 재협의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제5항 및 제6항을 준용한다.</u> ⑩ <u>우주항공청장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제1항에 따른 협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1항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하여 허가등을 한 경우에는 해당 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허가등의 취소, 행위의 중지, 시설물의 철거 등 원상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요청할 수 있고, 그 요청을 받은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u> 제20조(우주개발의 지원 및 협조 요청) ① ----- ----- -----<u>행정기관의</u>----- ----- ----- ----- ----- -----<u>행정기관의</u>----- ----- ----- -----. 1. 2.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나. 검토의견

현행법 제11조에 따르면 대한민국의 영역 또는 대한민국의 관할권이 미치는 지역·구조물에서 우주발사체를 발사하려는 자는 안전성 분석보고서, 손해배상책임 부담계획서 등 발사계획서를 첨부하여 우주항공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함.

우주항공청장이 우주발사체 발사허가를 총괄하여 수행하면서 발사시설을 관리하고는 있으나, 그 인근에서 발생하는 건축, 설치 등 행위에 관하여 별도로 관여하거나 협의할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되어 있지는 않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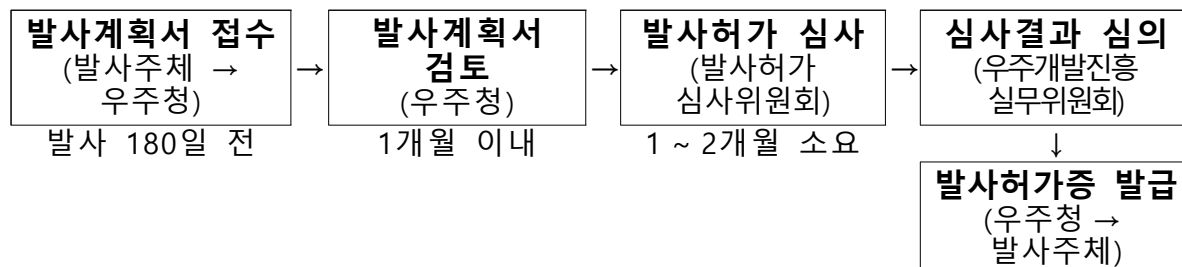
개정안은 현행법에 제11조의2와 제19조의2 등을 신설하여 우주항공청장이 우주발사체 발사시설 주변지역을 ‘발사안전구역’으로 지정·변경·해제할 수 있도록 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발사안전구역 내에서의 건축물 신·증축, 해상구조물 설치 등 행위에 관한 허가 등 처분을 하려는 경우 우주항공청장과 협의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

우주발사체 발사허가는 공공안전 확보 및 국제의무 준수 등 국가 차원의 관리가 필수적임. 우주조약(OST : Outer Space Treaty)에 따르면 발사행위 주체가 정부조직 또는 비정부 기관 여부에 상관없이 우주사고로 인해 발생한 제3자 손해배상은 우주물체 발사국 또는 등록국의

정부 책임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어 국가차원의 관리·감독이 요구됨.

[우주발사체 발사 허가절차]



[우주발사체 발사 허가현황]

순번	발 사 일	발사장소	발사체명	개발주관	발사허가
1	'09. 8. 25.	나로우주센터	나로호 1차	항우연	국가우주위('09. 6. 2.)
2	'10. 6. 10.	나로우주센터	나로호 2차	항우연	
3	'13. 1. 30.	나로우주센터	나로호 3차	항우연	우주개발진흥실무위('12. 5. 25.)
4	'21. 10. 21.	나로우주센터	누리호 1차	항우연	국가우주위('21. 8. 12.)
5	'22. 6. 21.	나로우주센터	누리호 2차	항우연	
6	'23. 5. 25.	나로우주센터	누리호 3차	항우연	우주개발진흥실무위('23. 3. 31.)
7	'23. 12. 4.	제주 남해상	고체추진 시험발사체	국과연	우주개발진흥실무위('23. 11. 21.)
8	'25. 11. 27.	나로우주센터	누리호 4차	항우연/HAS	우주개발진흥실무위('25. 10. 20.)
9	'25. 12. 20.	브라질 알칸타라	한빛-나노 1차	이노스페이스	
10	'26. 4월	제주 남해상	국방 우주발사체	국과연	발사허가 심사 중('25. 12. ~)
11	'26. 8월	나로우주센터	누리호 5차	항우연/HAS	발사계획서 접수 예정

개정안과 관련하여 다음 사항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첫째, 우주산업의 전략적 중요성이 확대되면서 국내 우주발사체 발사가 증가하고, 발사시설 주변지역의 보호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할 필요가 있음.

특히, 2024년 11월 고흥 나로우주센터에서 한국형발사체 누리호 4차 발사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짐에 따라 향후 정부 및 민간 차원의 우주 발사체 발사 시도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이에 따라 발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 위험, 낙하물, 폭발 및 환경적 영향 등으로부터 발사시설 인근 지역과 주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의 필요성도 함께 증대되고 있음.

우주항공청에 따르면, 국내 우주발사체 발사시설 및 그 주변지역 중 고흥 나로우주센터 인근에서 각종 개발행위 및 건축행위 등에 대해 허가·인가 등 행정처분이 이루어진 사례는 “해상풍력발전시설 등 해상 구조물의 설치” 관련 전기사업허가 1건¹⁾으로 파악하고 있음.

1) 탕건해상풍력(현대건설), '23. 3. 28.(고흥군 허가)

[발사시설 주변지역 현황]

발사시설		발사시설 주변지역 현황 (면적, 인구, 입주시설 등)		
나로우주센터	고흥군	면적(m²)		807,174,091
		인구(명)		59,455
		주택수		34,812
		섬	유인도(개)	23
			무인도(개)	207
			면적(km²)	134
			인구(명)	9,200
		봉래면 (외나로도)	면적(m²)	28,389,309
			인구(명)	1,788
			초등학교1, 중학교1, 수련시설2, 종교시설8, 여객선터미널1, 은행3, 소방서1, 경찰서1 등	
		동일면 (내나로도)	면적(m²)	21,150,278
			인구(명)	1,377

※ 고흥군청 홈페이지 통계정보(2023. 12. 31. 기준), 인구(2025. 12. 31. 기준)

이는 발사안전구역 지정이 향후 지역 개발 및 주민 생활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으므로 발사안전구역 제도는 안전 확보 수단을 넘어 지역사회에 미치는 효과를 충분히 고려해야 할 것으로 보임.

둘째, 발사안전구역 지정 및 행정기관의 처분 협의에 관한 사항을 국가우주위원회의 심의사항에 포함하는 것에 대해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안 제11조의2제1항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우주발사체 발사시설

주변지역을 발사안전구역으로 지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현행 제6조제2항²⁾의 국가우주위원회 심의사항에는 발사안전구역 지정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지 않고 있음.

발사안전구역 지정은 지역 주민의 재산권 행사 및 개발행위에 직접적인 제한을 초래할 수 있는 사안인 만큼, 이를 국가우주위원회의 공식적인 심의사항으로 명확히 규정하여 절차적 정당성과 투명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또한, 안 제19조의2제2항에서 행정기관의 처분에 관하여 우주항공청장과 협의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러한 협의 절차 또한 위원회의 심의 또는 심사 사항에 포함시킴으로써 결정 과정의 민주성과 공정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참고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13조³⁾에 따른 보호구역

2) 제6조(국가우주위원회) ① 기본계획의 수립 등 우주개발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국가우주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다만, 제6호의 사항은 국가의 안전보장 등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기본계획, 위성정보활용종합계획 및 제15조제1항에 따른 우주위험대비기본계획(이하 이 항에서 “기본계획등”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

2. 기본계획등과 관련된 정부의 중요 정책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국가정보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주요 업무의 조정에 관한 사항

3. 제7조에 따른 우주개발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중요 사항

4. 우주개발사업 성과의 이용·관리·평가에 관한 사항

5. 우주개발사업에 필요한 자원 조달 및 투자계획에 관한 사항

6. 우주발사체의 발사허가에 관한 사항

7. 제19조제2항에 따른 우주개발의 시정(是正)에 관한 사항

7의2. 제22조에 따른 우주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지정 해제에 관한 사항

7의3. 제23조의2에 따른 투자진흥지구의 지정 및 제23조의3에 따른 투자진흥지구의 지정 해제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위원회의 위원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③ 이하 생략

3)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13조(행정기관의 처분에 관한 협의 등) ①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보호구역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한 허가나 그 밖의 처분(이하 “허가등”이라 한다)을 하려는

안의 행정기관의 처분에 관한 협의 등에 대해 제15조4)의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 심의위원회 심의사항에 ‘협의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음.

셋째, 유사 제도의 시행 사례를 참고하여 발사안전구역 지정과 관련하여 주변 지역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면밀한 검토가 요구됨.

유사 제도로써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을 보호하고 군사작전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이하 “보호구역”)을 지정하는 구역으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협의절차와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작전성 검토 등 협의기준에 따라 국방부장관 또는 관할부대장등과 협의하여야 한다.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도 이와 같다. 다만, 보호구역의 보호·관리 및 군사작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건축물의 신축·증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건축물의 용도변경
 2. 도로·철도·교량·운하·터널·수로·매설물 등과 그 부속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변경
 3. 하천 또는 해면의 매립·준설(浚渫)과 항만의 축조 또는 변경
 4. 광물·토석(土石) 또는 토사(土砂)의 채취
 5. 해안의 굴착
 6. 조림 또는 임목(林木)의 벌채
 7. 토지의 개간 또는 지형의 변경
 8. 해저시설물의 부설 또는 변경
 9. 통신시설의 설치와 그 사용
 10. 총포의 발사 또는 폭발물의 폭발
 11. 해운의 영위
 12. 어업권 또는 양식업권의 설정, 수산동식물의 포획 또는 채취
 13. 부표(浮標)·입표(立標), 그 밖의 표지의 설치 또는 변경
- 4)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15조(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 심의위원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 소속으로 국방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 심의위원회(이하 “국방부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국방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2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제2항에 따른 합동참모본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 심의위원회로 하여금 심의하게 할 수 있다.

1. 보호구역등의 지정·변경 또는 해제에 관한 사항
2. 제13조에 따른 국방부장관 소관 협의에 관한 사항
3. ~ 5. 생략
- ② ~ ⑤ 생략

로서 통제보호구역과 제한보호구역으로 구분하고 있음.

또한 같은 법 제13조에 따라 보호구역 안에서는 건축물 신축·중축, 해저시설물 부설 등의 행위에 관한 허가나 그 밖의 처분을 하려는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국방부장관 또는 관할부대장 등과 협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과 관련하여 보호구역 지정에 따른 권리침해와 보상문제로 인해 해당 행정처분의 재량권 남용 또는 손실의 보상 범위에 대한 공방⁵⁾이 제기되고 있음.

따라서, 향후 발사안전구역 지정이 우주개발이라는 공익적 목적을 충분히 고려하되, 해당 지정으로 인하여 개인의 재산권 제한이 공익에 비해 과도하지 않은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해 보임.

한편, 개정안에 대해 기후에너지환경부는 하천의 매립·준설은 하천 기본계획 수립⁶⁾ 시 관계 행정기관과 협의 및 수자원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되므로, 불필요한 중복 협의 방지를 위해 개정안 제19

5) 대법원 2020. 7. 9. 선고 2017두39785(개발행위불허가처분취소)
수원지방법원 2017. 5.30. 선고 2016구합65610(용도변경허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

6) 「하천법」

제25조(하천기본계획)① ~ ④ 생략

⑤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하천관리청은 하천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때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수자원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 ⑧ 생략

조의2제1항제3호의 ‘하천’ 문구의 삭제가 필요하다는 의견임.

이에 대해 우주항공청은 하천기본계획 수립 시 관련 계획 및 관계 기관을 조사하는 방식, 관계 기관과 협의하는 구체적인 절차 등이 관련 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우주항공청이 관계 기관과의 협의에서 누락 혹은 배제될 우려가 있다는 의견을 개진함.

문 의 처
02)6788-5227